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방안 마련 필요〉

■ 한정애의원 · 정희용의원 ·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57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6
1. 제안취지	6
2. 결의안의 주요 내용	13
3.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15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한정애의원·정희용의원·김성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탈석탄과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응을 엄중히 인식하며,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능동적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핵심 의제인 탈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에 관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정 사항을 주목하며, 국내 여건을 고려하고 전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2022년 3월 유엔 환경총회(UNEA)의 결의안을 환영하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한다. 특히,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국가 기후환경 외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탈석탄을 포함한 탈화석연료의 국제적 논의 강화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 등, 관련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력과 산업 그리고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고 새로운 국가 전략 마련과 선제적 대응,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래세대,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 노동,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

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범국민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 마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손실 및 피해에 따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협정의 목표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마련하였고,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종합보고서(SYR)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그리고 2035년까지 60% 감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당위성을 강조함.

이러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 9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석탄 사용이 2050년까지 90% 감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특히 전력부문에서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식하고 그 외 국가들에서는 2040년까지 전력부문의 탄소중립 필요성을 강조함.

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이 명기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결정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탈석탄을 포함한 탈화석연료에 관하여 국제적 논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탈탄소 달성 목표를 재확인하며, 2030년대 전반기 또는 1.5℃ 상승 제한이 가능한 시기에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합의함에 따라 향후 G20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탈석탄은 핵심 의제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대응책과 전략 마련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의 오염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마련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오는 11월 관련 협약 마련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가 기후환경 외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화석연료 문제에 관한 전 지구적 논의 동향을 엄중히 인식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선제적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

에 우리나라의 전력과 산업 그리고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고 관련 법적 제도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선도적 기후행동 국가로 거듭나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대한민국 국회의 사명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제안 취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기온은 1.09℃ 가량 상승(우리나라는 약 1.6℃, 지구평균의 약 1.47배¹⁾)하였고, 이 추세로 상승할 경우 21세기 말까지 3.7℃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홍수,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와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음.²⁾

이에 국제사회는 '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³⁾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제가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를 대체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임.

1)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환경부, 2023년 4월 19일 공개)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간 한국 연평균기온 상승폭은 1.6℃로 세계 평균 1.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2) 우리나라도 2024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이 25.6도로 평년(23.7도)보다 1.9도 높게 나타나는 등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여름철 평균기온을 넘어서는 등 기상관측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음.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이며, 협약의 이행 및 과학·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구 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목 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
범 위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
감축 의무국가	주로 선진국	모든 당사국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	상향식
목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비징벌적
목표 설정기준	특별한 언급 없음	진전 원칙
지속가능성	공약기간에 종료 시점이 있어 지속가능한지 의문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행위자	국가 중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자료: 환경부

파리협정은 지구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well below)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pursuing efforts)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당사국에게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20년 말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 비전 및 전략인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의 수립을 요청하였음.

참고로 2015년 파리협정을 비준한 195개국은 5년마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0년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하였고, 이후 한국 정부도 2025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5년까지의 감축계획 목표를 제출하여야 함.

2023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톤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나,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는 세계 11위 수준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2018년 10월 제48차 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적으로 규정⁴⁾하였고, 동 법 시행령에서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 C)를 2018년 대비 40%⁵⁾로 명시하였음.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인 291백만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2031년~2049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아직 미비한 상황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실적	2030 목표		주요 감축수단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 ¹⁾	- 전원믹스 재구성(석탄↓, 재생에너지↑ 등) - 전력시장 개선 등 수요 효율화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 공정 효율화, 연·원료 전환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자발적인 감축활동 유도
	건물	52.1	35.0 (32.8%)	35.0 (32.8%)	-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 건물 효율개선
	수송	98.1	61.0 (37.8%)	61.0 (37.8%)	- 무공해차·선박 보급 - 내연차 기준강화, 주행거리 감축
	농축수산물	24.7	18.0 (27.1%)	18.0 (27.1%)	- 저탄소 농축산업 기술 보급 - 설비 효율화·저탄소화
	폐기물	17.1	9.1 (46.8%)	9.1 (46.8%)	- 폐기물 원천감량 -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수소	(-)	7.6	8.4 ²⁾	- 그린수소 실증 및 인프라 구축 - 수소 활용범위 확대
	탈루 등	5.6	3.9	3.9	-
흡	흡수원	(-41.3)	-26.7	-26.7	- 산림·습지 보호·복원

5) (기존) 2018년(7억 2,700만톤) 대비 26.3% → (상향) 2018년 대비 40%를 감축

* 2018년 7억 2,700만톤 → 2030년 4억 3,600만톤

수 및 제 거		)			- 도시숲 등 신규흡수원 확대
	CCUS ⁴⁾	(-)	-10.3	-11.2 ³⁾	- 근거법 제정 및 상용화 R&D CCS 저장소 확보
	국제감 축	(-)	-33.5	-37.5 ⁴⁾	- 국외 감축활동 수행 후 크레딧 거래

1)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400만톤 추가 감축

2) 수소 수요량 최신화에 따른 공급량 확대 반영 (블루수소 +10.5만톤 → 온실가스 0.8백만톤 ↑)

3) 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결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4) CCUS(Carbon capture and storage)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5)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자료: 환경부

법률안 제정 당시에는 중장기 감축목표의 시점과 관련하여 1차 ND C 목표 시점인 2030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2차 NDC의 경우 목표시점이 결정되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중장기 감축목표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정안이 통과(2021.8.31.)된 바 있음.

그러나, 2031~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대한 대강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시점까지 점진적·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고,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 불합치⁶⁾(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적용)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후변화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변화 대응

6)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후속입법을 주문하며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

이 환경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명확히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강화된 기후위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2030년 이후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 결의안의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함께 현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 이후 협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법적 구속력, 국가별 책임 등 주요 쟁점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2024년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5차 회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법적 구속력, 재정 지원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대한민국은 협약 논의과정에서 소정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여한 바 있음.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INC 회의 진행 경과]

구분	진행시점	주요내용
유엔환경총회	2022년 3월	-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2024년까지

결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을 마련하기로 결의
INC-1	2022년 11월, 우루과이	- 협약 초안을 위한 논의 시작. - 플라스틱 오염의 전 주기적 접근 필요성과 협약의 기본 원칙 논의
INC-2	2023년 5월, 프랑스	- 협약 초안의 주요 요소 논의 - 국가별 역할과 책임, 플라스틱 생산 감축, 폐기물 관리 등 주요 쟁점 부각
INC-3	2023년 11월 케냐	- 협약 초안 작성 단계 진입 - 법적 구속력 수준과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 논의
INC-4	2024년 4월 캐나다	- 협약 초안 세부 내용 조정 -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활용 기술 확대, 유해 화학물질 규제 관련 논의 지속
INC-5	2024년 11월, 대한민국 부산	- 플라스틱 협약 초안 최종 조율 - 주요 쟁점(생산 감축, 법적 구속력, 재정 지원, 책임 차별화)으로 회원국 간 이견 발생
추가협상	2025년 예정	- INC-5에서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 지속 - 최종 협약 채택 목표

자료: 환경부

2. 결의안의 주요 내용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탈석탄 및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구축하여 미래세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사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문1은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2025년 상반기까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음.

주문2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을 환영하고, 국내 플라스틱 생산·소비·재활용 전반에 걸친 법적 제도를 정비·강화하며,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것임.

주문3은 탈석탄, 탈화석연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등 국제적 동향에 따른 통합적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전력·산업·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며, 미래세대,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범국민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3.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동 결의안은 급박한 기후위기의 현실에 대응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이,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일시적으로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⁷⁾하는 등 기후위기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실행 계획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 속도가 국제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며,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간 연계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동 결의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을 지지하여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노력과 국가 기후환경 외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주문하고 있음.

7) 세계기상기구(WMO), '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2024-2028', 2024.6.5.

참고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하였고,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구성된 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2024년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문서를 채택하는 INC 5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플라스틱 생산감축 목표 설정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국가간 이견으로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였음.

특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소비국 등은 생산량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산유국 등은 경제성장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함에 따라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향후 추가협상은 2025년 중 이루어질 예정이나 정확한 협상 재개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음.

INC 5차 회의가 종료되었음에도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생산감축 등을 위한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동 결의안은 탈화석연료의 국제적 논의 강화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종합적 국가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세대,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 노동,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

응 정책 및 국민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평가·점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22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체 발전량의 9.22%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인 30.3%에 비해 낮은 상황⁸⁾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비율]

(단위: GWh,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발전량(GWh)	562,219	578,014	594,609	589,200	579,999	611,015	626,448
신·재생에너지 발전량(GWh)	41,049	47,306	53,688	52,341	43,124	50,657	57,780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30	8.18	9.03	8.88	7.44	8.29	9.22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주요 선진국이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

8) 국제 기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한국(2.6%)은 독일(19.6%), 이탈리아(19.2%), 영국(14.8%), 프랑스(13.6%), 호주(9.8%), 미국(8.4%), 일본(7.8%) 등 다른 선진국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어 있지 못한 상황임.

RE100⁹⁾과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지 않으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장벽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동 결의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책임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관련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동 결의안은 기후위기 및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